

정보교류차단 및 이해상충거래 관리방안 등 주요 내용

- 회사는 정보교류통제를 총괄하는 담당임원을 지정하여야 하며, 달리 정하기 전까지는 준법감시인을 정보교류통제 담당임원으로 하며, 준법감시조직은 정보교류통제 담당조직으로 한다(이하 정보교류통제 담당임원 및 담당조직을 총칭하여 "정보교류통제 담당임원등"이라 한다).
-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되는 정보
 1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74 조 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 중요정보로서 이해상충의 우려가 없는 정보
 2.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임원의 승인을 받은 정보(당사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정보교류차단 대상 제외 승인 정보는 없으며, 향후 변동시 재공개 예정임)
- 상시적 정보교류차단
 1. 원칙 :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의 종류, 특성 및 수익구조,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정보교류차단대상부문을구성하고 1)사무공간의 분리 2)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제한 등 전산적 분리 3)정보교류차단대상부문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부문과 비대상부문 간 임직원의 회의통신등 기록 유지·관리
 2. 현황 : 고유재산운용 담당팀과 헤지펀드운용팀 간에 1)사무공간 분리 2)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제한을 적용하여 정보차단벽을 설치
- 예외적 교류의 방법
 1. 대상 정보에 접근하여야 할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부문 임원 및 정보교류통제 담당임원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준수하여 교류
 2. 인사, 회계, 재무, 경영지원, 경영분석, 상품개발, 전산, 결제, 법무, 준법감시 및 리스크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후선 업무 목적의 예외적 교류 허용
- 미공개중요정보 등과 관련하여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거래제한 또는 거래주의 대상 금융투자상품을 지정하고 목록을 작성하고 거래제한 목록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는 회사 및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를 제한 (공개일 이내 거래제한 또는 거래주의 대상목록으로 지정된 금융투자상품은 없음)
- 이해상충 우려가 있다고 파악된 거래를 유형별로 구체화하여 목록을 작성·관리하고 거래 유형별로 거래 중단, 고객에 해당 사실의 고지 등 이해상충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함